#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00

발의연월일: 2024. 12. 30.

발 의 자:이개호・위성곤・김현정

이정문 • 서영교 • 부승찬

정진욱 • 조인철 • 박수현

전진숙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이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아직 처리시설의 부지 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원자력발전 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원전 부지 내 장기간 저장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를 제외하여 동 지역자원시설세가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 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 하게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7102호)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 호 제71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을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화력발전·원자력발전"을 각각 "화력발전·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시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①
•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	
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	
는 금액을 관할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	
여야 한다.	
1.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	1
세·도세( <u>화력발전·원자력발</u>	<u>화력발전 · 원자력발</u>
<u>전</u> 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전 및 방사성폐기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	
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u>화력발전・원</u>	③ <u>화력발전·원</u>
<u>자력발전</u> 에 대한 각각의 지역	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자원시설세를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관할 시·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	

호에	따른	금액.	은 :	같은	호에
따른	시·급	간 및	제2	9조의	2제2
항제2	호에	따른	자치	구에	균등
배분형	한다.				

- 1. <u>화력발전·원자력발전</u>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화력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군
- 2. (생략)
- ④ (생 략)

1. 화력발전 • 원자력발전 및 방
<u>사성폐기물</u>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